



## EU, 녹색채권 표준 승인

- 채권시장의 그린워싱 방지 목표 -

유럽의회는 2023. 10. 4.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기업에 대한 새로운 기준(The European Green Bond Standard, 이하 'EU 녹색채권 표준' 혹은 'EU GBS')을 승인했고, 이사회는 2023. 10. 23. 해당 표준을 채택했습니다. EU 녹색채권 표준은 ESG 투자자들을 위한 올바른 정보 제공과 함께 그린워싱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ESMA(European Securities Markets Authority, 유럽증권시장청)가 담당기관으로서 녹색채권 발행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부 검토자들을 등록하고 감독할 예정입니다. 이 표준은 EU 관보에 게재된 지 20일 후에 발효되며, 발효 이후 12개월 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1. EU 녹색채권 표준의 등장 배경

EU GBS는 2020. 1. 4. 유럽 그린딜 투자 계획(European Green Deal Investment Plan)의 일부로 처음 그 개념이 발표되었고, 이후 2021. 7.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녹색채권 규정(EU Green Bond Regulation) 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 EU의회는 2022. 4. 초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였고, 이어서 유럽의회 경제 및 통화위원회(ECON Committee)는 2022. 5. 관련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공동 입법자들은 2023. 2. EU 녹색채권에 관한 잠정적 합의를 이끌어냈고, 2023. 5. 10. EU의회의 상설 대표자 위원회에서 전체적인 타협안을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유럽의회는 2023. 10. 4. EU 녹색채권 표준을 승인했고, 이사회는 2023. 10. 23. 해당 표준을 채택했습니다.

EU GBS는 녹색채권에 대한 새로운 자발적 체제를 수립하여, EU가 지속가능한 금융의 주요 시장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도록 하고, 지속가능한 금융 제품과 관련된 그린워싱 위험에 대처하며, EU 녹색채권 라벨의 사용을 규제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관련 화우 지난 뉴스레터:

- EU와 미국, 그린워싱 규제 동향(23.10)

<https://www.hwawoo.com/kor/insights/newsletter/11690>

- 한국형 녹색채권 지침서 개정안 시행(23.02)

<https://www.hwawoo.com/kor/insights/newsletter/11299>

## 2. EU 녹색채권 표준의 주요 내용

### (1) 투자설명서의 발행

EU 녹색채권(이하 'EuGB')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EU 투자설명서 규정(EU Prospectus Regulation)을 준수하여 투자설명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EU GBS에 따라 투자설명서에는 (i) 투자설명서 전체에 해당 채권이 EuGB로 지정되어 있고, (ii) EuGB가 EU GBS에 따라 발행되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발행자가 자본적 지출 계획(Capex Plan)을 게시해야 하는 경우, 해당 요약본도 투자설명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관련 증권법에 따라 증권을 대중에게 공개하거나 규제 시장에 상장을 요청하는 경우 투자설명서가 필요합니다.

### (2) 조달자금의 사용

EuGB의 순 조달자금(net proceeds of EuGB)은 EU 택소노미에 따라 할당되어야 합니다. EU 택소노미는 ① 경제활동이 열거된 환경목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if an economic activity contributes substantially towards an enumerated environmental objective), ② 다른 환경 목표를 크게 해치지 않으며(not harm any of the other environmental objectives), ③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를 준수하여 수행되고(carried out in compliance with minimum social safe guards), ④ 특정 기술 심사 기준(TSC)을 준수하는 경우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것으로 간주합니다(complies certain technical screening criteria(TSC))

### (3) 유연성 포켓(Flexibility Pocket)

아직 EU 택소노미에 포함되지 않은 부문과 특정 활동의 경우 '유연성 포켓'이란 제도를 통해 EuGB 순조달자금의 최대 15%를 TSC를 제외한 EU 택소노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제활동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EU GBS가 시행 초기부터 유용하게 활용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유연성 포켓의 활용과 필요성은 유럽의 기후 중립으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향후 몇 년 동안 매력적인 친환경 투자 기회가 늘어남에 따라 재평가될 것입니다.

### (4) Factsheet 및 할당 및 영향보고서(Allocation and Impact Reports)

발행자는 EuGB를 발행하기 전에 외부 검토자의 발행 전 검토를 받은 Factsheet을 발행해야 합니다. 주요 항목에는 EuGB가 EU 택소노미에 따른 환경 목표를 포함하여 발행자의 환경 전략에 어떻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지 여부 및 채권 조달금이 EU 택소노미에 부합하는 경제활동에 할당되는지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EU GBS에 따라 발행자는 연간 할당 보고서를 발행해야 하며, 완전 할당 후에는 외부 검토자로부터 발행 후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발행자는 완전 할당 후 채권 만기 동안 적어도 한 번은 영향 보고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영향 보고서와 연간 할당 보고서의 템플릿은 EU GBS의 부록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5) 발행 회사에 대한 감독제도

EuGB 발행자는 해당 회원국의 EU 투자설명서 규정에 따라 관련 투자설명서를 검토하고 승인하는 관할 당국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관할 당국은 규정 준수를 강제하기 위해 다양한 권한과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관할 당국은 발행자가 투명성 및 외부 검토 요건(예: Factsheet)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최대 10일 동안 청약 또는 거래 승인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관할 당국은 발행자가 계속 준수하지 않는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청약 또는 거래 승인을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최대 1년간 추가 발행 금지, EuGB 지정 취소, 벌금, 규정 미준수 사실 공개 및 발행자의 웹사이트 게시 등이 있습니다. 행정 제재 또는 기타 행정 조치를 부과하는

결정에 대한 공표는 관할 당국이 대상자에게 해당 결정에 대한 통지를 한 즉시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합니다.

### (6) 외부 검토자를 위한 독립 감독체제

외부 검토자는 EuGB가 EU 택소노미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외부 검토는 투자자에게 EuGB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제공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EU GBS는 또한 실제 및 잠재적 이해 상충을 피하는 데 특히 중점을 두고 ESMA 등록 대상이자 감독 대상인 외부 검토자를 위한 독립적인 규제 체제를 수립합니다.

## 3. 국내기업에 대한 시사점

EU GBS는 EU 녹색채권이라는 라벨을 얻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조건들을 명시하고,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제재 및 관리감독 기관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녹색채권 발행과 관련하여 민간의 자율규제나 권고를 넘어 정부기관이 구속력 있는 규범을 제정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EU는 환경에 관한 국제적 규범을 선도하며, EU 회원국들이 글로벌 녹색채권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EU GBS가 장기적으로 녹색채권 발행에 관한 국제규범으로 통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녹색 자금을 원활히 조달하기 위해서는 국내기업들도 EU GBS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우의 ESG센터는 막연한 ESG 업무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Contacts

## 신승국

미국변호사

T. (+82) 2 6182 8502

E. [synn@yoonyang.com](mailto:synn@yoonyang.com)

## 이근우

파트너변호사

T. (+82) 2 6003 7558

E. [klee@yoonyang.com](mailto:klee@yoonyang.com)

## 김정남

수석전문위원

T. (+82) 2 6003 8559

E. [jnkim@yoonyang.com](mailto:jnkim@yoonyang.com)

## 유현상

변호사

T. (+82) 2 6182 8716

E. [hsryu@yoonyang.com](mailto:hsryu@yoonyang.com)

## 양희

컨설턴트

T. (+82) 2 6003 7674

E. [hyang@yoonyang.com](mailto:hyang@yoonyang.com)

## 김현지

컨설턴트

T. (+82) 2 6003 7470

E. [khji@yoonyang.com](mailto:khji@yoonyang.com)